

## H 아파트 화재



# 한 밤중에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화재 발생

-어린 자매 목숨 잃어

사망 2명, 부상 2명, 재산피해 2천 만원

## 1. 일반사항

- 건물명 : H 아파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 화재일시 : 1987년 4월 30일 23시 10분(목요일)
- 발화위치 : 609호 거실 보일러
- 화재원인 : 보일러 연료누출

## 2. 건물개요

이 아파트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로변 경사지에 지난 1969년도에 건축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지하 1층, 지상 6층)에다 다시 1974년도에 지상 3층(지하 1층) 건물을 증축하여 현재는 지층과 1층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동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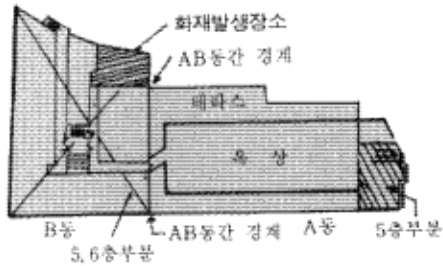
건물 내부구조는 미군장교 숙소로 사용되어 오던 것을 전면 개조하여 아파트로 분양하였기 때문에 복잡하고 특히 화재가 발생한 기존부분은 복도가 여러 갈래로 이어져 있으나 내부 옥내계단 1개소를 제외하고 옥외계단이 1개소 뿐이다. 또한 난방은 각 세대별로 개별 난방을 설치하고 있어 안전시설 미비, 시설 자재의 성능 및 불량품 사용 여부 등 시설의 관리 통제가 곤란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았다.

LP 가스 시설도 개별 저장 사용으로 배관이 복잡하게 이어져 있고 이중 노후된 시설도 많아 연쇄사고로 대형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많은 실정이었다(전에도 가스 폭발에 의한 사고가 세 차례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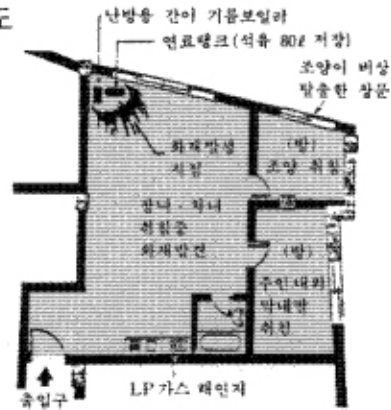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는 중앙에 주방이 함께 있는 거실이 있고 동측으로 방이 두 개 있으며 그 하나는 주인이 살고 다른 하나는 세를 주었다.

주방의 가스 레인지의 옥상으로 부터 금속 배관을 통해 LP 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거실에는 최근 구입 설치한 난방용 석유 보일러가 현관 반대측 창가에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는 약 80ℓ 정도의 석유 용기가 놓여 있었으나 전혀 구획되지 않은 상태였다.

### 발화층 평면도



### 발화세대 평면도



### 3. 화재상황

불은 1987년 4월 30일 밤 11시 10분경 609호 거실에 있는 보일러 주위에서 발생되었다.

이 당시 거실에는 주인 박씨의 장녀와 차녀가, 안방에는 박씨 내외 그리고 막내딸이 자고 있었으며 작은 방에서는 세입자 조양이 자고 있었다.

이 날 거실에는 난방용 간이 보일러가 전과 같이 저녁 7시경부터 자동조절되도록 장치되어 있었고 LP 가스 주 밸브도 취침 전 잠가놓은 상태였다.

불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장녀(12세)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잠결에 화재가 난 것을 알아채고 안방으로 뛰어 들면서 아버지에게 알렸다. 박씨는 화재 규모가 작은 것으로 판단, 초기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소화기 사용이 여의치 못하여 지체하는 동안 불은 가연성 내장재 가재도구등을 태우면서 609호 전체로 확산되었다.

조사결과 불은 거실에 설치된 기름보일러의 자동조절밸브가 고장나는 바람에 연료가 유출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 <한 가정을 비탄에 빠뜨린 화재원인의 보일러>  
거실에 설치된 이 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잠 자고있던 일가족 중 딸 2명이 소사하였다.



↑ <보일러용 연료용기>  
80ℓ 용량의 석유용기는 아무런 안전 조치없이 보일러와 함께 거실에 설치, 사용되었다.

#### 4. 피난상황

불이 나자 처음 화재를 발견했을 때에는 화재규모가 작아 대피보다 진화를 시도하였다.

이 때 부인은 막내 딸(4세)을 데리고 급히 밖으로 대피하였고 연기와 고함소리를 듣고 화재를 감지한 주민들은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한 후 승강기와 옥내계단 및 옥외 비상계단을 통하여 급히 대피하였으며 일부는 진화를 도우려 하였다.

그러나 화재는 확산되어 자체 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주인 남자는 방안에 남아있던 두 딸을 구하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화세가 너무 강해 미처 구조하지 못하고 박씨는 중화상을 입고 주민들에 의해서 구출되었다.

한편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조양도 불이 난 것을 뒤늦게 알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방안에 갇혀 창 밖으로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화염과 연기에 견디다 못하여 창문에서 아파트 옆 2층 건물 지붕으로 뛰어내리다 심한 중상을 입었다.



이 건물 주변에는 2m 이상되는 도로가 있었으나 계단 또는 경사지였고 진입로가 좁어진 곳이 많아 소방차는 물론 고층 건물 화재에서 꼭 필요하고가사다리차는 접근할 수가 없어 방에 갇혀있던 두 자녀와 세입자 조양은 효과적으로 구조하지 못하였다. 불은 긴급출동한 소방차(25대)에 의하여 화재발생 50분만인 밤 12시 경에 완전히 진화되었다.

##### 〈발화세대의 외벽〉

발화세대쪽의 외벽에는 공지가 없어 소방차의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구조를 요청하다 이 창문으로 뛰어내려 여자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건물에는 전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총 15개소 설치) 및 소화기(각층에 ABC 분말소화기 5대씩 비치)외에 연결송수관설비 등을 설치하였으나 이번 화재시 전혀 사용되지 못하였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오동작 등을 우려하여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비상전원이 방전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특히 소화기는 도난, 전도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즉시 사용할 수 없게 매어 놓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화재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크게한 주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1987년 4월 15일 협회 점검시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상전원이 방전 상태였으며 소화전 펌프도 전원이 차단되어 있었음)

## 6. 피해상황

이 화재로 잠을 자다 미쳐 대피하지 못한 어린 딸 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주인 남자는 딸들을 구하려다 심한 화상을 입었다. 또한 2층 지붕으로 뛰어 내리다 세들어 살던 조양이 심한 골절상을 입었다.

재산피해도 여러세대에 걸쳐 발생하였는데 화재가 발생한 609호는 전소되었고 맞은 편 618호도 내부가 일부 소실되었다. 6층 전체(18세대)가 연기로 인하여 내장등이 손상되었으며 발화층 아래에 위치한 12세대는 소화작업시 살수된 물에 의하여 내부가 오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2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7. 문제점 및 대책

가. 이 건물은 원래 미군장교의 숙소로 사용되던 것을 아파트 용도로 증·개축한 것으로 구조 및 배치가 복잡하였다. 복도가 여러 갈래로 이어져 있으나 그 중 한쪽 끝에만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가운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막다른 끝쪽에 있는 주민은 전혀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나. 고층건물 주위에는 소화활동상 필요한 충분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발화세대 쪽에는 공지가 없어 소방차의 접근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소화 및 구조활동이 지연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 설치된 소방시설을 도난, 오동작 등의 명목으로 사용불능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피난, 대피의 장애가 되며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다. 화재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라. 이 아파트는 난방시설을 각 세대별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보일러와 연료용기를 전혀 구획되어 있지 않은 거실에 설치하였고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이 되었다.

설치위치 및 관리등에 문제가 있는 세대별 유류보일러의 사용을 피하고 중앙공급식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의 세대가 상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무지와 관리자의 무관심이 어린 생명과 많은 재산을 앗아갔다. 이러한 가능성은 항상 이 아파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설마”하는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우리의 주변에 위협은 없는가, 부족함은 없는가 다시한번 확인하고 보완하여 나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겠다.